

7

감사의견서

농협법 제 71조 및 우리조합 정관 제 137조 제2항에 의하여

2017년 1월 23일 조합장으로부터 제출된

2017년도 사업보고서,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(안)의

각 조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내용이 적정함을 인정함.

서기 2018년 01월 24일

풍기인삼협동조합

감사조경덕 (인)

감사김규원 (인)